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접사용채널 콘텐츠에 지역채널 콘텐츠 포함〉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3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접사용채널 콘텐츠에 지역채널 콘텐츠 포함	2
※ 참고자료 1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5.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직접사용채널 콘텐츠에 지역채널 콘텐츠 포함

가. 개정안 요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

현행	개정안
2. (생략)	<u>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u>
④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18조¹⁾에 따르면 「방송법」 제2조제3호²⁾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

-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④ 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으므로,

지역채널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그런데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직접사용채널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자 하나, 현행 「방송법」 체계상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채널은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³⁾」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었으며, 직접사용채널은 2000년 「방송법」 제정 시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새롭게 도입되었음.

-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합병⁴⁾함에 따라, 동일 법인 또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지역채널 콘텐츠를 공급받게

3) 2000. 1. 12. 타법폐지

4) LGU⁺-CJ헬로('19.12월), SKT-티브로드('20), KT-현대HCN('21)

되면, 이는 현행법 제21조제1항⁵⁾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제한 규정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방송법」상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은 별개의 개념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외부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작·방송할 경우, 이는 직접사용채널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 전국 단위 사업권을 가진 IPTV가 지역보도, 생활정보, 선거토론회 등이 포함된 지역채널을 송출할 경우, 사실상 종합편성 채널 역할이 가능하여 종합 채널로 변모할 수 있음.
- 지역보도 콘텐츠의 광역 유통으로 유사 보도 채널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고, 여론 형성 기능이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어 IPTV가 보도기능을 통해 콘텐츠 대가 협상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방송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개정안 관련 사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케이블TV협회**는 특정 SO의 지역채널 콘텐츠(특히, 지역뉴스)가 IPTV를 통하여 전국 송출이 가능할 수 있어 다른 구역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SO의 지역채널 제작, 운영에 타격을 주고 일부 뉴스 콘텐츠의 전국화가 우려되므로, 최소한 SO 지역채널 콘텐츠의 IPTV 채널 편성 시 해당 구역에 한정하여 송출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지역방송협회**(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9개사, 지역MBC협회 16개사)는 통신 3사가 주요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콘텐츠가 전국으로 유통될 경우 현행법상 직접사용채널 운용 금지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고,

유사 보도채널 운영 등을 통해 여론 형성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지상파방송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 공적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임.

- **TV홈쇼핑협회**는 TV홈쇼핑은 7년마다 정부 재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케이블TV는 실증특례로 승인 없이 유사한 상거래 방송(지역채널 커머스)을 운영 중인바, TV홈쇼핑 업계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케이블TV 등과 제도화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이 합의를 무산시키고 IPTV 등 타 플랫폼으로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채널 커머스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데이터홈쇼핑협회는 IPTV로 확대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기존 홈쇼핑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 연합뉴스TV는 지역채널은 해당 방송구역 내에 지역보도 프로그램 등만 송신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 사업권역을 가진 IPTV사에게 지역채널 공급 시 법규제 혼란이 예상되므로 현행법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지역채널의 제작·편성은 SO의 자격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IPTV에서 송출하는 것으로 IPTV 사업자의 자격으로 별도의 제작·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IPTV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1 : 유료방송 관련 자료⁶⁾

□ 유료방송 가입자수

(단위: 만 단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유선	1,323	1,293	1,273	1,254	2,131
위성방송	310	302	295	284	1,227
IPTV	1,825	1,969	2,057	2,093	278
합계	3,458	3,564	3,625	3,631	3,636

□ 유료방송 사업자 현황

구분		개수	내용	
IPTV		3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SO	MSO	5	(주)엘지헬로비전(23개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23개사), (주)딜라이브(16개사), (주)씨엠비(11개사), (주)케이티에이치씨엔(8개사)	
	중소SO	9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주), 남인천방송(주), (주)KCTV광주방송, JCN 울산중앙방송(주),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금강방송(주), (주)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주)서경방송	
위성		1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PP	승인	홈쇼핑	7 (TV)	(주)지에스리테일, (주)씨제이이엔엠, (주)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엔에스쇼핑, (주)홈앤쇼핑, (주)공영홈쇼핑
			10 (데이터)	주식회사 케이티알파, 에스케이스토아(주), 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주)더블유쇼핑, (주)티알엔, (주)지에스리테일, (주)씨제이이엔엠, (주)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엔에스쇼핑
		종편	4	(주)조선방송, (주)매일방송, (주)채널에이, (주)제이티비씨
		보도	2	(주)연합뉴스티브이, (주)와이티엔
	등록	455	TV 312, 라디오 123, 데이터 20	

※ 중계유선방송사업자(14개사), 음악유선방송사업자(1개사)

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료방송 주요지표

구 분		사업자 수	가입자 수 (천 단자)	점유율	방송 매출 (억 원)	점유율
IPTV	KT	1	8,987	24.71%	20,639	28.5%
	SKB(IPTV)	1	6,781	18.65%	15,954	22.1%
	LGU+	1	5,542	15.24%	13,479	18.6%
	소계	3	21,310	58.60%	50,072	69.2%
SO	LG헬로비전	23	3,511	9.65%	5,625	7.8%
	SKB(SO)	23	2,815	7.74%	3,828	5.3%
	딜라이브	16	1,905	5.24%	3,060	4.2%
	CMB	11	1,362	3.75%	1,189	1.6%
	HCN	8	1,258	3.46%	1,698	2.3%
	중소SO	9	1,422	3.91%	1,935	2.7%
	소계	90	12,273	33.75%	17,335	24.0%
위성방송	KT Skylife	1	2,781	7.65%	4,920	6.8%
합계		94	36,365	100.00%	72,327	100.0%

※ 출처: 2024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조사검증 결과 및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